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2018. 3.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2. 20. (화)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 2. 22. (목)

4.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개정이유

- 법제처의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발굴한,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의 명칭 변경,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불이익에 관해 규정한,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조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나.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제22조 (예산의 지원), 제25조 (보고 및 자료제출)
보고 및 자료제출 기한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예산의 지원)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u>14일</u>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④ ----- <u>2개월</u> ----- ----- -----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u>10일</u>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u>제29조까지</u> 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일</u> ----- ----- 1. <u>제20조</u> ----- ----- <u>제30조까지</u> ----- -----

현행	개정안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2.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신설>	3.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마포구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28조(시설물의 철거) 등 소관부처 명칭 정비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개정안
제28조(시설물의 철거)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기업청장</u> 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의 철거) ----- -----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 ----- -----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법제처) 목록

■ 조례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10조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제1항), 인정을 취소 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함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전통시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u>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를 규정할 수 없음</u>	해당 조문 삭제
제14조	구청장은 임시시장이 법 제14조 제1항의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u>조례에서 개설취소와 같은 불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u>	해당 조문 삭제
제21조 제1항	정부·서울특별시·마포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상인회를 설립하려는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정부·서울특별시·마포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위한 <u>목적과 관계없이 상인회를 설립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것인데, 조례의내용은 상인회를 설립하였으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u>	'정부·서울특별시·마포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삭제

조 항	내 용	문 제 점	개선방안
제 22 조 제4항	<p>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p>	<p>「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제32조의6제1항 각호의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발생한 날부터 <u>2개월 이내</u>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u>14일 이내</u>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u>상위법령에 위배될</u> 소지가 있음 	<p>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p>
제 25 조 제2항	<p>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u>20일 이내</u>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 기간을 <u>10일 이내</u>로 하여 상위법령과 다르며, <u>대상 자료도 상위법령과 다르게</u> 규정하고 있음</p>	<p>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출 기간 및 대상 자료 수정</p>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전통시장 11, 상점가 4)

연번	시 장 명	소 재 지	구분	등록일자	시 설 규 모 (㎡, 개)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건물점유 토지면적)	영업장 면적	매장면적	점포 수
1	공 덕 시 장	만리재로 19(공덕동)	건물 형 (등록)	74.04.14	1,576	1,699	1,699	750.83	43
2	마 포 시 장	마포대로6길 16(공덕동)(C동) 만리재로 23(공덕동)(A동)		77.07.15	4,924	1,689	1,689	1,386	78
3	동 진 시 장	성미산로 198(연남동)		74.06.05	1,107	492	492	438	19
4	영 진 시 장	동교로12길 21(서교동)		72.07.08	1,976	3,761.29	1,523.24	1,458	13
5	서 교 시 장	홍익로3길 20(서교동)		74.05.28	2,644.60	12,640.59	4,314.71	3,298.61	54
6	합 정 시 장	양화진길 5(합정동)		70.07.29	1,548	5,433.67	1,537	1,109	11
7	마포농수산물시장	월드컵로 235(성산동)		98.07.18	33,888	17,319.95	14,367	12,337.24	147
8	신 수 시 장	토정로17길 17(신수동)		72.09.13	849	1,092.16	1,092.16	907.12	1
9	망원동월드컵시장	망원로7길 3-31(망원동)일대	골목 형 (인정)	06.03.13	3,369.10	5,473.39	1,604	1,604	49
10	망 원 시 장	망원로3길 3-7(망원동)일대		06.03.13	5,459.80	11,159.90	2,868.11	2,868.11	86
11	아 현 시 장	마포대로21길 7(아현동)일대		13.07.23	11,937.2	18,849.35	4,406.8	4,406.8	168
12	용 강 동 상 점 가	토정로 315(용강동)일대	상 점 가	11.01.13	9,210.49	67,311.38 (9,242.66)	14,283.29	14,283.29	274
13	도 화 동 상 점 가	도화길 새창로3길(도화동)일대		11.01.13	10,133	(5,650.26)	15,722.2	15,722.2	146
14	홍 대 견 고 싶 은 거 리 상 점 가	어울마당로109~155 (동교동, 서교동)일대		12.02.24	9,382.84	(5,135)	11,849.12	11,849.12	150
15	상 압 동 상 점 가	월드컵북로44길33 (상암동)		13.04.10	13,281	(5,558.36)	11,411.5	11,411.5	139

상인회 등록 현황(10개)

연번	명 칭	사 무 소	등 록 일	대 표 자	비 고
1	망원월드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망원로7길 31(망원동)	2004.04.20	박 병 찬	
2	망 원 시 장 상 인 회	포은로6길 27(망원동)	2006.07.27	최 태 규	
3	서 교 시 장 상 인 회	홍익로3길 20(서교동) 6층	2009.05.28	이 진 동	
4	용 강 동 상 점 가 상 인 회	토정로 319 (용강동)	2011.01.13	이 재 훈	
5	도 화 동 상 점 가 상 인 회	마포대로4나길 4(마포동)	2011.01.13	이 중 만	
6	마포농수산물시장상인번영회	월드컵로 235(성산동)2층	2011.04.19	남 상 열	
7	마 포 공 덕 시 장 상 인 회	마포대로6길 16(공덕동)	2011.06.17	박 종 석	
8	홍 대 견 고 싶 은 거 리 상 인 회	어울마당로 141(동교동) 지층	2012.02.24	이 우 명	
9	상 압 동 상 점 가 상 인 회	월드컵북로44길33(상암동)	2013.04.10	김 중 덕	
10	아 현 시 장 상 인 회	마포대로21길 70(아현동)	2013.07.23	박 정 환	